

## 울산광역시중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8.  
제출자 :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통장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고, 통·반의 정확한 현황관리로 주민편의 도모 및 자치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자구수정 : 통적부관리 ⇒ 통·반현황관리(안 제7조제3호)
- 통·반장의 임무추가신설 : 고지서 및 통지서 전달(안 제7조제4호)

### 3. 근거법규

- 지방자치법 제 4조
- 울산광역시중구통·반설치조례

### 4. 개정조례안 : “따로 붙임”

### 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### 6. 기타참고사항 : 관련조례사본 1부.

## 울산광역시중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통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중 “통에 통적부”를 “통·반 현황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4호중 “각종 사실 확인”을 “각종 사실 확인 및 고지서·통지서 전달”로 하며, 같은조 제9호중 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”을 “구·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무) (생략)            1~2 (생략)            3.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<u>통·반</u>  <u>통적부 관리</u>            4. <u>각종 사실 확인</u>              5~8 (생략)            9.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           및 <u>동</u>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</p>	<p>제7조(임무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1~2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3.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<u>통·반</u>  <u>현황 관리</u>            4. <u>각종 사실 확인 및 고지서, 통지서</u>  <u>전달</u>            5~8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9.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           및 <u>구·동</u>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</p>

## 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92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통·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9. 8. 3.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'99. 8. 31
- 라. 위원회 상정 : '99. 9. 14

###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)

○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통장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고 통·반의 정확한 현황 관리로 주민편의 도모 및 자치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, 주요 내용으로 “통에 통적부관리”를 “통·반현황관리”로 하고 통·반장의 임무 중 “고지서 및 통지서전달”임무를 추가 신설하려는 내용임.

### 4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송원수)

○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고지서 및 통지서 전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의 편의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“통에 통적부 관리”를 “통·반현황관리”로 하고 통·반장의 임무중 “고지서, 통지서 전달”임무를 추가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